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T University Program 설치 및 운영 규정

제정 2012. 3. 1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T University Program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T University Program(이하 "NITU 교육과정"이라 한다)이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,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(이하 "참여대학교"이라 한다) 및 NIT 미래산업 연구단지에 참여하는 기업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NIT 관련 교육과정을 말한다.
- 제3조(설치과정 및 참여학과) NITU교육과정은 학사과정으로 설치하고 참여학과는 NIT 관련 학과로 한다.
- 제4조(주관대학 및 교육과정의 지도) NITU교육과정은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하여 주관학과와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- 제5조(운영주관부서) NITU교육과정은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.
- 제6조(교육과정의 운영) ① NITU교육과정은 전공과정으로 설치하며, 교육이수 과정은 4학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NITU교육과정은 참여학과의 전공과정으로 한다.
- 제7조(교육과정의 이수형태) NITU교육과정은 1, 2, 3학년 과정은 소속 학과에서, 4학년 과정은 NITU교육과정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, NITU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.
- 제8조(이수학점) NITU교육과정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, 교과목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으로 정한다.
- 제9조(학점인정) NITU교육과정 이수전에 NITU교육과정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같거나, 비슷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정해진 심의과정을 거쳐 NITU교육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원자격) NITU교육과정의 지원자격은 본교 학생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학점 102학점 이상이며, 6개 학기 이상 성적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학생으로 소속 학과장 및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하며, 참여대학교 학생은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 참여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.
- 제11조(정원) NITU교육과정의 정원은 학생선발 시 정한다.
- 제12조(지원 및 선발) NITU교육과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소속 학과장과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에 정해진 지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.
- 제13조(복수전공, 부전공) NITU교육과정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, 취득학점 등 이수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부칙(제55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